

프랑스의 노동시간 단축, 실업문제에 대한 도전장

김신양

우리민족서로돕기불교운동본부 국제부

지난 5월 19일 프랑스 하원은
마침내 '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법안' (Aubry법, 이하
오브리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으로 주당 노동시간은
39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된다. 프랑스 인들은 이렇게
해서 오랫동안 씨름해왔던 문제를
돌파하기 위한 태세를 갖추었다.

아무도 지금 내가 겪는 이 고통을 알지 못한다.

"눈을 떠도 해야 할 일이 없는데 왜 일어나야 하나?
갈 데도 없는데 굳이 씻어야 할 필요가 없다.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도 주머니에 남은 돈이 없다. 그래도 뭔가는
해야 할 텐데… 어디에 가서 누구에게 이 고통을 하소연
할 수 있을까?"

지저분한 옷차림에 온몸에 냄새가 나는 이들이 공원
벤치나 역 광장 혹은 길거리에 멍하니 앉아서 이런 물음
을 던지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느끼는 수치심
이나 소외감 원망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 더구나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가 나날이 발전해 가고, 풍요가 넘쳐 과
잉으로 비대해져 가고 있을 때 그들이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은 더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 프랑스는 성
장일로를 걷고 있으나, 실업률은 두 자리 밑으로 떨어지
지 않는다. 인구 5,700만에 실업자 330만, 12만명의 젊
은이가 1년 이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고, 장기실



98년 1월 ACI(실업에 저항하는 공동체동) 소속 성원들이 프랑스 고속철도 TGV를 기로하고 실업대책수립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업자가 1백만 이상이며, 그 중 반은 최소 2년 이상된 실업자이다. 뿐만 아니라 공중보건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의 20~25%에 해당하는 1200만~1500만명의 프랑스인이 취약한 경제 상황에 놓여있다(*Le Monde dossier*, 1998년 4월자).

이제 실업은 무능력하고 게으른 소수의 문제가 아니라 한 가정에 한 명은 실업사이거나 불완전 취업자여서, 프랑스의 실업문제는 사회보장제도로서는 터진 물을 막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길거리 곳곳에 전을 치고 앉아 구걸하는 사람들, 지하철을 타기만 하면 실직으로 생계가 막혔다고 하소연하는 남자들, 맥도날드에서 숨도 쉬지 못하고 하루 종일 일해도 겨우 아파트 월세 값을 내기에도 역

부족인 젊은이들, 결국 이들은 거리를 떠돌며 구호재단을 찾아다니며 생계를 이어 나가다가 나중에는 그것도 귀찮아져 완전히 거리에서 노숙을 하고 '자유인'으로 살아간다. 무법지대이다.

그러나 아직 아심 있고 자존심이 있는 젊은이들은 그렇게 주저앉을 수 없다. 좋은 차를 굽이며 그 옆에 멋진 애인도 동반하고 싶고, 영세민에게 임대하는 공영주택(HLM)에서 벗어나 멋진 아파트를 빌려 살계인을 터뜨리며 친구들과 파티를 열고 싶어한다. 그러기에 굳이 찾아하지 않는 일자리를 위해 하루를 허비하기보다는 마약 밀매나 도둑질로 한몫 단단히 쟁기는 게 더 확실한 방법이다. 이렇게 실업이라는 것은 온 사회를 병들게 만들고 사람들을 자살하게 만든다. 아무리

실업수당이 있고, 빈민구제 대책이 있어도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허용하지 않는 사회는 몸살을 앓을 수밖에 없다. 발가락 손가락이 아프다고 그것을 잘라내 버릴 수 있는가. 내 코가 못생겼다고 그건 내 몸의 일부가 아니라고 할 수 있나?

지난 5월 19일 프랑스 하원은 마침내 '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법안' (Aubry법, 이하 오브리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으로 주당 노동시간은 39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된다. 프랑스 인들은 이렇게 해서 오랫동안 싸름해왔던 문제를 돌파하기 위한 태세를 갖추었다. 작년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난 우리 나라 실업인구, 매일 만 명이 일자리를 잊고 있다. 살인적인 인원감축으로만 구조조정을 할 수 있다 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 나라 사용자들에게 프랑스의 사례가 따끔한 본보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비록 지구의 다른 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프랑스의 노동시간 단축 사례와 입법과정을 소개한다.

1.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

프랑스는 지난 50년 동안 연간 노동시간이 급격히 단축되었는데, 여기서 단축이라 함은 두 가지 요소를 조합한 것이다. 첫째는 주당 노동시간의 단축, 둘째는 매년 휴가기간의 연장이다. 이러한 변

천은 시간 재배치와 노동리듬 양식의 변형을 동반해왔다. 2차 대전 후 50년간 상용직 노동자의 주당노동시간은 약 5시간 단축되었다. 특히 피고용인의 연간노동시간은 연차휴가의 연장과 단시간 노동의 증가로 1950시간에서 1520시간으로 감소되었다.

1) 1945~1982: 노동시간의 단일화

(1) 2차 대전 후 ~ 1960년대 중반

이 기간동안 연노동시간은 같은 시간이 유지되었는데 이는 주당노동시간의 근소한 증가와 휴가의 연장(1956년 3주 동안의 유급휴가가 법적으로 보장됨)에 기인한다.

(2) ~ 1980년대초

이 시기는 급격한 노동시간 단축으로 특징지워 진다. 1969년 주당 노동시간 단축에 4주간의 유급휴가 더해진다. 1974년 '오일쇼크' 때까지는 경제성장의 결과물을 공평히 분배한다는 의미에서였으나, 1974년 이후 경기침체와 실업 증가로 노동시간에 대한 노조의 입장은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그들의 주장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일을 덜 하자"의 구호로 모아진다. 드디어 노동에도 분배라는 개념이 도입된 것이다. 특히 이 시기에는 경제분야별 ·

직업유형별 노동시간의 격차가 줄어들고 단일한 노동시간대로 접어든다.

2) 노동시간의 개별화

주당 39노동시간과 5주간 유급휴가의 일반화를 포고하는 1982년 법령으로 연노동시간은 현저히 감소했다. 노동시간 재배치에 대한 계약형식의 협약이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던져준 이 법령은 임금변화 없이 노동시간을 단축할 것을 제안함으로써 노동시간 재배치를 협상하도록 유도 했다.

이후 협상과 결정을 하는 곳은 국가에서 직업별·부문별 기업으로 이동하게 된다. 현재 기업들의 활동 다변화와 수요에 더욱 잘 부합하기 위해 종업원의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로 노동자 내부의 유형별 차이가 심화되고, 관리직급의 노동시간이 실무를 담당하는 직급의 그것보다 더 길어지고, 공공부문과 여타 부문의 차이, 남녀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남녀의 차이는 최근 10년간 정도를 더해왔는데 그것은 단시간노동의 증가가 주로 여성노동자의 몫으로 들려졌기 때문이다. 단시간노동의 발전, 개별적 추가노동시간의 증가로 노동시간의 개별화가 이 시기의 특징이 된다.

1981년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정부의 주된 관심사로 떠올랐고, 노동의 분배 고, 노동의 분배라는 개념이 다시 대두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1982년부터는 1982년에 시행된 39시간으로의 노동시간 단축이 더 이상 고용창출에 큰 효과를 보이지 않자 노동시간의 전반적인 단축이라는 테마는 제쳐두고 생산기구

의 현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정책을 취하는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하게 된다. 즉, 노동시간의 재배치와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두 방안의 병행인 것이다.

2. 주시위는 던져졌다.

1) 주사위가 던져지기까지

(1) 정부의 입장: 꿩 먹고 알 먹고

노동시간 단축은 국회의원 선거기간 중 사회당 공약에서 제2순위였다. 조스팽 (Jospin) 수상의 입장에서 볼 때 공약의 이행은 실업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필요성 외에 첫째, 서민이나 소외 계층의 편에 서서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고자 하는 좌파로서의 선명성을 보이고 둘째, 공약을 이행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면서 실업자 운동을 지지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주장해온 녹색당이나 공산당 등을 결



1996년 1월 24일 AC의 행동대원들이 봉당의 한 슈퍼마켓을 점거하여 생필품을 살피고 있다.

집시켜야 할 의무이기도 하다(현 프랑스 정부는 좌파 연합 당이다).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는 실업자들의 운동에 지혜롭게 대응하고, 그들의 움직임에 호의적인 여론에 부응하기 위해 사회당 정부는 임금삭감 없는 주 근무 35시간제를 추진하였으며, 지난 5월 19일의 의회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1997년 경제 성장률이 3%였고, 1998년 또한 아시아의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2%의 성장을 올렸으며, 기업 이윤 또한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노동시간 감소는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고 새로운 고용은 다시 구매력을 상승시킬 것이므로 결국 경제성장에 유리하다는 계산의 결과이다. 또한 과거와는 달리 노동자들이 고용을 위해 장기간에 걸쳐 기술을 습득하여 노동강도

도 높아졌기 때문에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여가시간을 확보하자는 것이며, 모든 사람이 노동을 분배할 때 노동시간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법의 시행으로 정부는 5년 안에 약 21만~28만 명의 추가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전하고 있다.

(2) 우파의 입장

반면 우파에서는 입장이 나누어지는데 1996년 시도된 Robien법의 동조자들로 대변되는 쪽과 국가의 어떠한 개입도 거부하는 초 자유주의자들의 분파로, 이들은 이상하게도 줄곧 모든 논의에서 배제되어 왔다. 결국 5월 19일 최종 투표에서

RPR(공화당연합)과 UDF(프랑스민주연합)는 노동시간단축법안에 반대 표를 던졌고, 이 법안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한 상태이다.

(3) 사용자의 입장: 수상과의 전쟁선포

조스팽 수상이 사용자 대표를 협상 테이블에 앉히기까지는 무려 4개월이 걸렸다. 그 때가 1997년 10월 10일이다. 조스팽 수상이 자신의 의지를 표명하기가 무섭게 전국경영인위원회(CNPF) 대표인 강두아(Gandois)씨는 문을 박차고 나가며 정부에 대해 '전쟁'을 선포했다.

1998년 1월 27일 국회 토론에서 시락(Chirac) 프랑스 대통령은 입장을 다소 유보하였고, 전경련 대표는 결국 임기만료 전에 사표를 내면서 반대의사를 강하게 표명하였다. 그 뒤를 이은 세이이에르(Seilli re)는 좀더 전통적인 전술을 채택했다: 일단 조스팽과의 대화 재개는 받아들인다. 그러나 정부가 35시간을 강요한 만큼 유화전술을 쓸 것이다. 그러므로 여타 다른 분야에서 제동을 거는 것은 접어 두고서라도 생산도구 자산에 대한 세금의 증가를 억제하는 것으로 이익을 챙긴다.

5월 19일 최종 투표에서 RPR(공화당연합)과 UDF(프랑스민주연합)는 노동시간단축법안에 반대표를 던졌고, 이 법안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한 상태이다.

(4) 노동조합의 입장¹⁾

프랑스 민주 노조 연맹(CFDT)과 노동총연맹(CGT)은 프랑스 기독 노동자연맹(CFTC)과 함께 '오브리법'(노동시간단축에 관한 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협상에 박차를 가한 반면, 노동자의 힘(FO) 쪽에서는 처음부터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오래 전부터 노동시간 단축을 주장해왔던 CFDT는 협상에서 최대한 이득을 얻기 위해 준비해왔다. 우선 4월 30일~5월 2일까지 1천명을 대상으로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에 따르면 ① 54%가 노동시간 단축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② 약 3/4이 35시간으로의 단축이 실업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 생각하며, ③ 61%는 고용창출이 모든 것에 앞서 우선권을 가진다고 여기며, ④ 51%가 오브리법이 프랑스 경제를 개선할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CFDT는 노동시간 단축 문제에 본격 관여하기 위해 5월 12일 파리에 조합원을 집결시키기도 했다. CGT는 초기의 비관적인 태도에서 선회하여 오브리법으로 형성될 경기의 활성화를 충분히 이용할 것이라 했다.

1) Le Monde, 1998년 5월 13일자.

그러나 FO는 처음부터 끝까지 비판적 인데, 그 이유는 첫째 노동시간 단축으로 고용창출의 효과를 얻기는 어렵고, 둘째 노동시간 단축이 구매력을 감소시키며, 노동시장 유연화에 제동을 걸 수도 있다는 우려에 근거한다. 그들에 따르면, 고용창출은 먼저 임금 상승으로 구매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5) 실업자 조직: 평 대신 닭이라도

실업자 조직들은 탄생 때부터 노동시간 단축을 주장해왔다. 실업문제 전문 월간신문인 Partage(평등분배)에서는 지

난 15년 동안 전문연구가들의 연구화 조사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기사를 개재해왔다. 이들은 최초로 노동자의 집을 건설했으며, 이 신문의 발행인이자 편집인인 모리스 파가(Maurice Pagat)씨는 10월 10일 조스朋 수상이 노동시간 단축 계획을 발표했을 때, “그의 제안은 프랑스 역사를 깊이 있게 변화시키는 역사적인 대일에 합류하는 중대한 결정”이라고까지 평가했다 (Partage, 10월호, 26쪽).

가장 큰 규모의 실업자 조직인 ACI(실업에 저항하는 공동행동)나, MNCP(실업자와 불완전취업자를 위한 국민운동), Apeis(실업자와 불완전취업자의 고용 정

을어해설 프랑스의 노동조합

1. CGT(노동총연맹) - 1896년에 설립. 초기에 무정부주의와 마르크스주의를 지원하는 노동자들로 구성되었다. 이후 무정부주의자들과 개방주의자들간의 내분을 겪어, 1906년 아미앙 원장 세택으로 청당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했다. 그러나 원전히 비정치적인 노선을 견지하자는 입장과, 1921년 프랑스 공산당의 탄생으로 두 개의 경쟁 조직으로 분화되었다가 1936년 인민 전선 정부가 집권하자 다시 통합되었다. 1945년 공산주의자 수상의 등장으로 한 때, 조합원이 500만명에 이르는 홍글기를 맞이했지만, 1947년 오스크바를 추종한다고 비판하여 CGT-FO가 CGT에서 다시 분리되었다. 2차 대전 후 주요한 직책은 공산당 당원이 차지해 왔다.
2. CGT-FO(노동자의 힘) - 1947년 CGT에서 떨어져 나온 FO는 그 영향으로 비정치 노선을 강하게 견지한다. 공공부문의 하이트 카라 노동자와 전문 기술적 노동자 집단 가운데 가장 강력한 조직이며 노사 협조와 단체 교섭을 주구한다.
3. CFTC(프랑스기독노동자연맹) - 1919년 북부, 알자스(Alsace), 남서쪽 지방에 뿐만 350개의 노조에 의해 창립되었다. 초기부터 CGT의 이념에 반대하고, 기급투쟁보다는 협조, 쟁의업, 사회 안정을 선호했으며, 20년대 초반부터 정부와 협조 체제를 구축했다. 2차대전이 끝날 무렵 기독교 사회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1964년 다수가 CFDT(프랑스 민주 노동 연맹)로 개명하여 현재 소수파로 유지되고 있다.
4. CFDT(프랑스 민주 노동연맹) - 1964년에 탄생된 상대적으로 젊은 노동자 조직이다.

보교환 연대를 위한 연합) 같은 단체들은 효과적인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주당 근로시간을 32시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 조직은 현대기술 문명의 발달을 인간이 통제하기 방법으로 첫째 노동 시간의 과감한 단축, 둘째 직무와 임금의 공유, 셋째 사회적 유용성을 가지는 제3부문의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는 이념을 토대로 하고 있다.

주당 노동시간을 32시간으로 단축해도 충분할 만큼 이미 생산력은 발달되어 있기에 사회의 부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동체의 미래를 준비하는 부분으로 분배되어야 하기 때문에 생산활동에 직접 가담하지 않는 사회 활동도 물질적인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 시간 단축이라는 한계를 넘어 근본적인 부의 재편을 요구해왔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의 법안은 그들의 요구를 충족하기에는 아직 멀다는 것이다.

2) 오브리(Aubry)법

프랑스 국민들은 이 법이 통과되기까지 3년을 기다렸다. 그 경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1995년 3월 27일 대통령 선거를 앞

주당 노동시간을 32시간으로 단축해도 충분할 만큼 이미 생산력은 발달되어 있기에 사회의 부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동체의 미래를 준비하는 부분으로 분배되어야 하기 때문에 생산활동에 직접 가담하지 않는 사회 활동도 물질적인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두고 열린 포럼에서 대통령 후보인 RPR의 시락, UDF의 발라뒤르(Balladur), PS(사회당)의 조스팽은 소외퇴치에 관한 입법 원칙을 세우는데 공동입장을 취했다. ② 1995년 쥐페(Juppe) 수상은 「정책기조발표」에서 15분을 소외와의 전쟁에 할애했다. ③ 1997년 4월 21

일 「사회결속력강화」에 대한 법안 검토가 시작되었으나, 대통령의 의회 해산으로 중지되었다. ④ 1997년 6월 19일 「정책기조발표」에서 조스팽 수상은 '소외퇴치법'이 국회에 상정될 것이라 선언했다. ⑤ 1997년 7월 1일 고용연대 장관 마르틴느 오브리(Martine Aubry)는 소외퇴치 관련 법안이 가을에 국회에 상정될 것이라 확인했다. ⑥ 1997년 10월 10일 조스팽 수상은 '고용·임금·노동시간에 대한 협의회'에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⑦ 1998년 1월 27일 국회에 「노동시간 단축 권고와 방향」에 대한 법안이 상정되었다. ⑧ 1998년 5월 19일 4차례 논의 끝에 35시간 노동시간 단축 법안이 최종 채택되었다.

입법사상 가장 중요한 개혁이라 정부 스스로 극찬해 마지않았던 35시간법의 정신은 "효과적으로 고용을 창출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공공재정을 새로운 방식으로 사용하도록 방향을 지시하는 것"이

다. 2000년 1월 1일부터 법정노동시간이 20인 이상 사업장에서 35시간으로 단축되고, 농업·가내공업·협동조합 따위의 관련 분야는 2002년부터 시행되며, 중소기업도 2년의 유예기간을 가진다. 각 기업은 39시간을 유지할 수 있으나, 초과 4시간은 추가근무로 계산되어 25%의 할증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그러면 오브리법의 주요 항목은 아래와 같다.

3. 법이 통과된 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겨우 한 달이 지난 지금 “입법사에서 가장 중요한 개혁”이라는 사회당의 평가로부터 “근본적으로 나쁜 법”이라는 부정적인 평가까지 오브리법은 프랑스 사회를 냄비에 넣어 부글부글 끓도록 만들었고, 이웃 국가들 까지 자극하고 있다. 그러면 언론에 나온 오브리법 평가와 그 진행 상황을 살펴보

오브리법 주요 항목

- ① 노동시간 단축방식은 단위사업장이나 종종 생산업체의 상황에 맞게 협상의 위임장을 가진 노조대표와 사용자대표가 만나서 협상하도록 한다.
- ② 20인 이상 기업이 2000년 1월 1일 이전 노동시간을 단축할 경우(20인 이하는 2002년 1월 1일 이전),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 a) 노동시간 단축으로 추가인원을 고용할 경우 그 수가 기존인원의 6%에 달해야 한다. 만약 노동시간을 15% 단축하고, 그로 인한 효과로 최소 9% 추가고용을 할 때 그 기업은 그에 상응하는 추가지원금을 받는다.
 - b) 만약 노동시간을 10% 단축한 기업이 2003년 1월 1일 이전에 또다시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그 비율이 최소 15%에 이르고, 그 결과 총 9%의 추가고용을 창출할 경우 추가지원 혜택을 받는다.
 - c) 지원은 정부와 기업간의 협정에 의해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한 날부터 5년 동안 주어진다.
 - d) 만약 기업상황의 악화로 이미 단체교섭으로 인원감축을 시행하기로 한 기업이 노동시간 단축으로 최소 6%의 해고인원을 구제할 때도 동일한 지원금을 받을 것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15% 노동시간 단축으로 9%의 인원을 구제하면 추가지원 혜택을 받는다. 또한 일자리를 보존하는 기간은 최소 2년 이상이어야 하고, 지원은 노동시간 단축 시행일로부터 3년 동안 시행될 것이다(2년 만기 이후에 기업의 경제사정이나 고용상태에 따라 국가와 기업간 협약에 의해 2년 동안 추가지원 혜택이 가능하다).
 - e) 국가의 지원은 노동시간 단축의 적용을 받는 피고용 개개인에게 직접 부여된다.
 - f) 만약 기업이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노력과 더불어 더 이상의 조치를 하거나 젊은이들이나 장애자 또는 장기실업자를 고용하기 위한 노력을 보였을 때 추가지원혜택을 받는다.
 - g) 영세 규모의 기업이나 부문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재조직화를 시행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분담한다.
- ③ 39시간 이하로의 주당노동시간 단축은 기업이나 업체의 험기에 따라 휴가 형태로 재조작할 수 있다. 이 휴기는 ‘시간예금’ 이란 형태로 휴가기간을 적립할 수 있게 된다.
- ④ 정부는 늦어도 1999년 9월 30일까지 현 법안의 적용에 대한 중간평가 보고서를 사회 각 단체와 토론회 후 국회에 제출한다. 이 때 두 번째 법안을 제출할 것인데 그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주당 35시간 노동시간을 의무화할 것이다.

도록 하자.

1) 기 아즈나르(Guy Aznar)²⁾ : 사회학자

(1) 장점

① 39시간에서 35시간으로의 과감한 도약. 노동시간의 절진적인 단축, 즉 과거에 보았듯이 40시간에서 39시간으로의 단축은 고용창출 효과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35시간으로의 단축은 과감한 시도이다.

② 이 법은 상당히 유연하고 지혜로운 제도를 만들 것이다. 정치적으로 이 제도는 앞으로의 경제사정에 따라 법 적용의 마감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노동시간의 상당한 단축을 실시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제도는 시행에 관련된 부속조치들의 성패에 의존하지 않고 차후 협상 결과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③ 법이 적용되는 해로부터 매년 지원금을 점차 줄임으로써 이왕 시행할거라면 조속히 시행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법의 조속한 적용을 촉진한다.

④ 임금 총액 대비 지원비율을 정하지 않고 모든 일자리에 동일한 지원액을 상정함으로써 저임금 단순노동자로 구성된 기업에 유리하다. 이를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한데 노동시간 단축의 시행

이 이를수록 더 빨리 정부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2) 단점

①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최하 고용 창출인원 비율(6%)이 너무 낮다. 최소 10%가 되도록 가이드 라인을 상향조정 해야 한다.

② 법이 협상 내용에 대해 별 언급이 없어 협상을 어렵게 한다.

③ 노동시간 단축이 부유한 기업이나 임금수준이 높은 봉급자에게 부담을 지울 가능성이 크다.

2) 미셸 고데(Michel Godet)³⁾ : 공예학교 교수이자 저술가

(1) 노동자간 지위의 불평등이 한층 심화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대기업 종업원에게 (노동시간은 줄고 임금은 동일)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는 이익을 더 주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물을 필요가 있다.

(2) 고용을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자리의 독점을 막고 모든 이들이 교대로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휴가를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확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오브리법은 사원 20명 이하의 기업에게는 2002년 이후 적용되는데 실제 먼저 법의 혜택을 받아야 하는 것은 피고

2) Partage, 1997년 11/12월 합본호, 39쪽.

3) Liberation, 1998년 3월 6일자.

용인의 37%를 차지하는 이들 소규모 기업들이다.

3) 당부의 말들⁴⁾

35시간의 성공은 제대로 시행될 경우 기업 내 힘관계가 월급이 상향조정되고 대량으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쪽으로 쓰이는 경우이고, 실패는 그것이 임금의 감소, 노동시간의 연 단위 계산의 증가를 통한 노동시간 유연화로 실제적인 고용 창출로 나아가지 못하고 구애력이 감소하는 것이다.

실제 고민해야 할 문제는 첫째, 기업이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투자를 할 경우 저율로 대출해줌으로써 기업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어떠한 방법으로 공공기금을 운용할 것인가이다. 둘째, 노동시간 단축 반대자들에게 일자리를 나누어 가지는 것이 부를 생산하는데 제동을 걸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셋째 항상 더 많은 월급이 보장된 사람들의 임금을 삭감하도록 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에서 대기업까지 전국 곳곳에서 협상이 한창 진행중이다. 모든 산업분야가 연루되어 있으나 특히 소규모 기업들이 정부지원이라는 미끼에 이끌려 대기업보다 더 열성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한번 한 그룹 안의 최초 협약이 다른 그룹이나 지역 경쟁업체에 미칠 영향을 생

용어해설

1. 노동시간단축과 노동시간 재배치- 두 개념이 노동시간에 대한 유럽 차원 논의의 중앙에 위치한다. 노동시간단축이 노동의 집단적이고 실제적인 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노동시간 재배치는 노동시간을 줄이지 않고 시간의 탄력성을 증가하는 데 있다.
2. 연차제- 노동시간을 주 단위가 아닌 연 단위로 계산하면서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하는 제도이다. 주당 근무시간이 법정 기간의 이하 혹은 이상으로 설정될 수 있는 이 계산 방식은 기업에 신당한 탄력성을 제공한다.

각해서 신중할 수밖에 없다. 한번 맷은 협약은 이후 본보기로 사용되므로 사용자측에서는 극도로 주의하며, 노동자측은 빨리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다.

동일 품목 생산업체들 간에는 협상이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 이미 35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는 설탕제조업체나 은행을 제외하고는 아직 공식 대화가 시작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발그리(Balguerie)사 같은 경우 협상에 앞서 종업원을 대상으로 의견 조사를 했는데, 하루 8시간 일하고 15일 휴가를 취하기보다는 매일 7시간 30분으로 일일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쪽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2년 동안 임금인상은 동결한다(Liberation, 1998년 5월 19일자).

6월 24일 현재 약 25개 업체가 35시간 협정을 맺었다(Liberation, 1998년 6월

4) Liberation, 1998년 5월 19일자.

14일자). 고용연대부(노동부에 해당)의 집계에 따르면, 25개 기업과 맺은 협약으로 창출되는 새로운 일자리는 약 500개에 달한다고 한다. 그 선두주자 가운데는 이블린(Yvelines) 지역의 톰슨사가 있고, 약 30개 업체가 곧 합의에 이를 전망이다. 톰슨사의 경우 전종업원이 23일 추가 휴가의 혜택을 받게 되었고,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직원들도 오브리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대부분의 업체에서 주당 35시간으로의 노동시간감축의 참조가 된다하더라도 연단위 계산방식이 적용되어 연차제로 노동시간 단축이 시행된다.

4. 글을 맺으며

생활 수준의 향상과 여가시간 증가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는 개인에게 맡겨지거나 혹은 집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프랑스 정부는 여가시간 증가 쪽을 선택하였다. 노동시간의 단축이 노동의 재조직과 고정자산의 효과적인 이용으로 생산성의 향상을 도모하고, 그것이 시간당 임금인상분을 상쇄하리라 주장한다. 그들의 선택이 옳은 지의 여부는 1년 후 창출될 일자리 수로 평가될 것이다.

오브리 장관은 지금 바쁘다. 2500만 프랑(약 55억원)을 들여 일련의 대 국민홍보를 준비하고 있다. 60페이지에 달하는 협상 가이드 출판, 인터넷에 매주 노동시간 단축의 진행과 상황분석,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할 자에 대해

정보를 띄우고, 전화 08-03-35-2000를 통해 친절한 법률 서비스를 해주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임금인상이나 여가시간 연장이냐 하는 '배부른 고민'을 할 때가 아니라, 살아 남느냐 거리로 나앉느냐 하는 문제로 온 나라가 뒤집어질 판인데 먼 나라의 얘기가 무슨 소용이냐고 반문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닥친 위기를 해쳐 나갈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재벌 '개혁', 부실기업 정리, 대량 인원 감축 … 과연 이런 것밖에 없을까? 300만명이 넘는 실직자를 만들어 놓고서도 위기가 극복될 수 있을까? 분배는 넘쳐날 때 떼어 주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 이 크든 작든 나누어 가지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소수에게 집중될 일자리와 소득을 사회 구성원이 골고루 나눠 갖자는 취지를 갖고 시행될 오브리법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는 분명하다. ♦

참고 문헌

lexique de termes juridiques, Dalloz 1994
Olivier PIOT. Partage 1997. 10월호